



# 저출산 시대 난임·불임 증가와 보험의 역할

강성호 연구위원, 김동겸 수석연구원

만혼, 출산기피 및 연기, 각종 환경적 요인 등의 영향에 따라 국내 난임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 난임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난임환자 증가에 따라 난임치료 관련 진료비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난임치료에 대한 보장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 등을 감안할 때 가계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임.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민영보험 역할 강화를 통해 난임·불임 증가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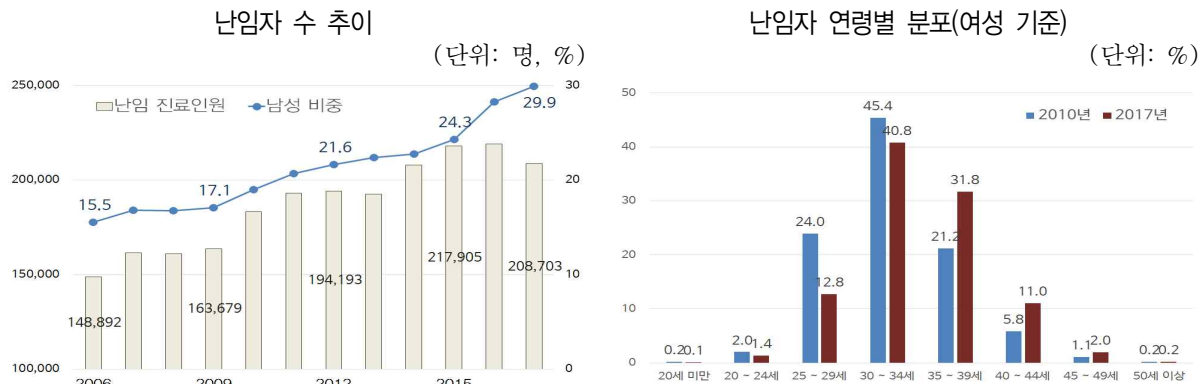
■ 만혼 및 출산계획 지연과 더불어 각종 환경적 요인<sup>1)</sup> 등으로 난임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남성 난임자가 크게 늘어나는 특징을 보임

- 난임자 수는 2006년 14만 8,892명에서 2017년 기준 20만 8,703명으로 연평균 3.1% 증가하였으며, 난임자 중 남성의 비중은 2006년 15.5%에서 2017년 29.9%로 늘어남
  -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난임률 수준은 13.2%(2015)로 미국 6.7%, 영국 8.6%, 독일 8.0%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음
- 여성 난임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의 난임자가 감소하였으나, 30대 중반 이후의 난임자는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대의 난임자 감소는 결혼연령 지연에 기인하며, 30대 중반 이후의 난임자 증가는 결혼 초기 사회적 기반마련을 위해 자녀계획을 미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주요국의 초산연령은 미국 26.4세, 영국 30.2세, 독일 30.9세,<sup>2)</sup> 우리나라 31.2세로, 초산연령과 난임발생 확률 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1) Deyhoul et al.(2017), Infertility-Related Risk Factor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Women's Health and Reproduction Sciences

2) Fertility Europe(2017) A Policy Audit on Fertility - Analysis of 9 EU Countries;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5), 「平成 22 年 第 14 回出生動向基本調査; 통계청(2015), 2015년 출생·사망통계; CDC(2015): Key Statistics from the 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그림 1〉 국내 난임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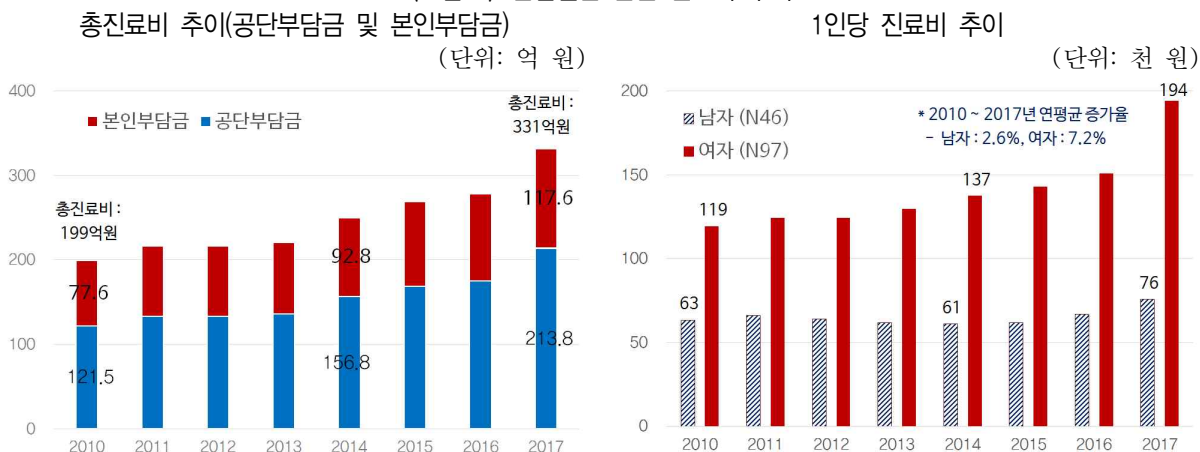


주: 1) 남성불임(N46), 여성불임(N97) 주상병 기준임 2) 2006년 ~ 2010년의 경우 여성불임에는 습관성유산(N96)이 포함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 난임자 증가에 따른 난임치료기술 증가로 인해 관련 진료비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난임치료에 대한 보장성 확대로 본인부담률은 2010년 39.0%에서 2017년 35.5%로 개선되었으나,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 및 약제비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담은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됨  
 - 보건사회연구원(2016)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체외수정 시술비는 평균 277만원이며, 의료기관 별로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sup>3)</sup>
- 난임진료 관련 진료비는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17년 331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1인당 진료비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2010~2017년 연평균증가율 남자 2.6%, 여자 7.2%)

〈그림 2〉 난임질환 관련 진료비 추이



주: 진료비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험자부담금과 환자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를 합한 금액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3) 보건사회연구원(2016), 2015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 일본 금융청은 2016년부터 난임치료 보험상품개발 규제 해소를 통해 관련 보험상품이 다양하게 출시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불임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4년 고액의 불임치료에 대한 공적지원 서비스를 시행하였으나 사각지대 발생 및 치료비 부담의 문제로 한계에 직면한 적이 있음
  - 동 지원 서비스는 정액급부, 나이 및 횟수 제한 등으로 상당한 사각지대<sup>4)</sup>가 존재하였고, 불임치료 비용이 1회당 30~40만 엔<sup>5)</sup> 등 고액이 소요되어 치료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 옴
- 이에 일본 금융청에서는 보험업법시행규칙 개정<sup>6)</sup>을 통해 2016년 4월부터 불임치료에 대한 보험인수를 허용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난임치료 관련 보험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계기가 됨

■ 일본 보험산업은 일본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에 부응하여 일본생명, 도쿄해상, Aiaru(アイアル) 소액단기보험회사 등에서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음

- 일본생명은 공적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난임치료기술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일본 최초의 보험상품인 ChouChou를 2016년에 10월에 출시함<sup>7)</sup>
  - 동 상품은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3대 질병 및 사망을 주계약으로 하고, 출산 및 특정 불임치료에 대한 의료비 보장을 특약의 형태로 취하는 상품임<sup>8)</sup>
  - 한편, 출산 시 출산지원 보험금 지급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출산한 자녀 수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금은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sup>9)</sup>
- 도쿄해상(東京海上)은 기업이나 건강보험조합을 대상으로 직원의 특정불임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불임치료 비용 등 보상보험”을 2016년 11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함<sup>10)</sup>
  - 동 상품은 기업 복리후생 차원의 단체보험상품으로 개인이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남성불임치료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 Aiaru(アイアル) 소액단기보험회사는 불임치료 자체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불임치료 중인 여

4) 법률상의 미혼인 부부, 아내가 43세 이상으로 불임치료를 시작, 소득제한을 초과한 가구 등

5) 厚生労働省, “特定不妊治療費助成事業の効果的・効率的な運用に関する検討会(第1回) 資料 不妊治療の患者数・治療の種類等について”

6) 金融庁(平成28年2月10日), “保険業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内閣府令(案)”, の公表について

7) 日本生命(2016. 9. 5), 新商品 “ニッセイ出産サポート給付金付3大疾病保障保険 ‘ChouChou!’”, の発売について

8) 상품 출시 후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약 5,000건의 계약이 체결함(マナー研究所(2017. 4. 29)),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 体外受精) 및 현미수정(micro-fertilization, 顕微授精) 등 특정불임치료에 대해 최대 12회를 한도로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함. 치료횟수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적용하며(1~6회: 5만 엔, 7회~12회: 10만 엔),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부담보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공적으로 보장해 주는 6회를 초과할 경우 보험금이 늘어나도록 상품이 설계되어 있음

9) 1인: 10만 엔, 2인: 30만 엔, 3인: 50만 엔, 4인: 70만 엔, 5인 이상: 100만 엔(단, 가입 후 1년 이내의 출산은 제외)

10) 東京海上日動火災保険株式会社(2016. 11. 1), “不妊治療費用等補償保険”, の販売開始について

성이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상품(子宝エール)<sup>11)</sup>을 2011년 12월에 출시하였음<sup>12)</sup>

- 불임치료 기간 중 6가지의 특정 질병을 제외한 항목을 보장하며, 불임치료 종료 후에는 정상적 보장내용의 의료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함

■ 미국에서는 단체보험을 중심으로 난임치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본시장에서는 난임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 해소를 위한 출산금융(Fertility Financing) 시장이 확산되는 추세임

- 뉴욕, 캘리포니아 등 15개 주에서 난임치료보험을 민영 단체의료보험의 형태로 운영 중임<sup>13)</sup>
  - 난임진단, 진단목적 검사, 투약 등을 보장하며, 시험관 시술의 경우 제한적으로 보장
- 출산금융이란 임신 및 출산관련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특화된 금융상품으로 대출 및 체외수정(IVF) 위험분담상품 등을 의미함<sup>14)</sup>
  - IVF 위험분담상품이란 체외수정 시술 실패 시 일정부분 비용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임

■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민영보험 역할 강화를 통해 난임불임 증가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그 동안 공적부문의 보장성 강화 추세 등에 따른 공적부문의 재정적 문제를 고려하면 민영보험의 역할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논의할 시점임
- 특히 난임치료 지원 및 출산 시 급부금 제공을 통한 출산지원 등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민영보험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본의 사례(출산지원 보험금 지급 등)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sup>15)</sup> **kiri**

11) 불임치료 중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임신·출산·육아 등의 정보 제공사이트(jineko, ジネコ) 운영회사인 PUZZLAB의 요청에 따라 공동개발한 상품임. 1년 갱신상품이며 보험료는 40세 여성 기준으로 월 2,000엔 수준임

12) 小林 雅史(2015, 10, 27), 不妊治療保険について - 現状と今後の方向性, ニッセイ基礎研究所

13) New York Times(2014), "Insurance Coverage for Fertility Treatments Varies Widely"

14) 금융연구원(2015), 「미국의 출산금융 확대」, 국제금융이슈

15)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난임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민영보험상품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적정보험료 산출의 어려움 불확실한 수익 등을 이유로 상품 출시가 되지 못한 상황임(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10. 23), "체외수정 시술비 보장 등 난임(難妊)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이 나옵니다"; 서울신문(2015. 6. 19), "작년 내놓겠다고 난임보험 6개월째 난임")